



##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 변경은 시기상조”

### - 적재전 물품확인제도 시행 관련 -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재전 물품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한 선적 24시간전까지 출항적하목록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다른 국가행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그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각각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적재전 물품확인제도 공청회를 열고 출항적하목록 제출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해운업계 및 복합운송업계는 미국행 해상화물의 경우 미국세관과의 CSI 체결로 인해 선적 24시간전에 출항적하목록을 전송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는 것은 무역업계와 운송업계의 실정을 전혀 도외시한 행정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관세청에 화물유형을 A~C형으로 분류하고, ▲ A유형

(B·C유형을 제외한 해상화물)의 경우 적재 24시간 전, ▲ B유형(근거리-중국, 일본 및 동남아행-해상화물)은 적재 12시간 전, ▲ C유형(항공화물, 특정 화물특성을 갖는 화물 및 환적화물)은 출항 익일 24:00까지 출항적하목록을 제출(전송)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선박회사 및 복운업체 임직원들은 현행 무역관행을 무시한 처사로서 운송인의 입장에서 전혀 수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할 실익을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9월 17일과 18일 각각 선주협회와 인천공항세관에서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 변경에 대해 선사/항공사 및 복운업계 관계자들과 업무처리절차를 협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에 공감하고, 계속하여 이에 대한 상황을 검토하여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

## 인천공항내 RFC 화물작업장 본격 사용

### - 화물터미널내 주차장 2천 2백평 임시적으로 -

**O**리 협회(KIFFA)는 항공화물 취급과 관련된 창고 과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터미널내 2,2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항공화물 RFC(Ready for Carriage)를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본격 사용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이후 화물터미널내에 복합운송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공화물창고가 턱없이 부족하여 그동안 터미널내의 구내도로 및 주차장 지역에서 화물분류 및 적하 등의 RFC 작업을 해왔으나 안전사고 발생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인천공항공사에서는 화물터미널 주차장 및 구내도로상에서 하고 있는 화물분류와 적하작업에 대해 단속하기로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의 작업에 대해 1회 적발시 정기주차권을 3개월 정지 및 재적발시 6개월간 정지함과 아울러 재적발 차량이 3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주차권의 신규발급 및 연장을 3개월간 정지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는 복운업체 전용 항공화물창고 부족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써 KIFFA에서 창고를 건립하려고 해도 그 부지를 할애하지 않는 정부 및 공사측에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창고 부족현상이 해소되는 시점

까지 임시작업장 마련을 촉구하여 지난 4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임시작업장은 단순히 화물분류 및 적하작업을 하는 장소로써 보관기능은 없으며, 그 위치는 B운송대리점동과 북측 인천항화물터미널 사이의 승용차 주차장 2,200평을 15개 복운업체 및 6개 운송업체들이 KIFFA

와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승인하에 사용중이다.

한편 협회에서는 항공화물창고 과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5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1단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대단위 복운업체 전용 창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

## ▣ 복운업체 이용자인 화주가 통관업무 더 원해 ▣

### - 복운업체에 대한 통관업무 허용여부 논란 관련 -

**우**리 협회는 최근 복합운송업체의 통관업무 취급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화주가 더 원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복운업체의 통관업무 수행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물류중심전문위원회와 통관소분과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관세청 및 한국관세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통관취급법인 불허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 협회에서만 일방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해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업체의 이용자인 화주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하수협의회) 및 정부기관(산업자원부)에서도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직접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실제로 국제간 일관수송을 이행하고 있는 복운업자의 통관업무 수행은 필수불가결한 업무 중의 하나임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관세사회에서는 우리 협회의 견의에 따른 관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에 상정('98.11.26)되었다가 폐기된 사안으로 행정부에서 재론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복운업체에 통관업을 취급하게 한다 하여 물류원활화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협회에서는 이 의견에 대한 반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난 7월 물류중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지난 7월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통관소분과회의에서도 우리 협회를 비롯한 관세부측과 관세사회·관세청·재경부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전문위원의 대다수 의견은 국가적 차원 및 국제물류환경을 고려해볼 때 관세행정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영위하기 좋게 주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통관취급법인 허용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

## ▣ 공항 관세자유지역내 토지사용료 인하요구 ▣

**우**리 협회에서는 관세자유지역내 항공화물 및 환적창고부지(약 3만 4,000평)에 복운업체 전용 대단위 물류(항공화물)창고 건립을 위하여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건의는 물론 각종 회의를 통해 토지사

용료 인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의 관세자유지역 사업시행안(2003. 4)에 의하면 토지임대료( $10,500\text{원}/\text{m}^2/\text{년}$ )를 경쟁력이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기존의 화물터미널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관세자유지역 내·외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관세자유지역내의 물류·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조립·가공된 화물과 외국으로부터 유치한 Sea & Air화물 등은 10,500원을 적용하나 국내 Local화물이 단순히 관세자유지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지역의 토지사용료 수준인 31,000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경우 국내 총 수출입 항공화물중 10,500원을 적용 받을 화물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관세자유지역내에 창고건립은 큰 이점이 없어 화물터미널지역에 건립하는 방안과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우리 복운업체들이 관세자유지역 사업시행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쟁력 있는 토지임대료를

바탕으로 한 대단위 물류창고를 운영하므로써 관세자유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취급은 물론 3자물류운영, 중국 동북부 3성(산동성, 요령성, 흑룡강성)발착 Sea & Air · Air & Sea화물을 적극 유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국제물류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창고건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동 화물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토지사용료가 저렴 해야 다른 동남아국가보다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참여정부가 부르짖는 국정 3대 추진과제중의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의 조기정착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자유지역의 초기단계에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사용료 인하는 물론 동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귀추가 주목된다. ●

## KE, 수출항공화물 접수절차 신·구 병행 시행

### - RFC 화물 우대 및 점진적 확대 -

**인** 천국제공항내 수출항공화물 접수절차가 종전과 같아 시행된다.

최근 대한항공(KE)은 화물보안검색 강화, 적하목록 사전제출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RFC (Ready For Carriage)상태로의 화물접수 이행을 위해 화물반입후 항공운송장(AWB)을 제출하고 있는 화물접수 절차를 10월 1일부터는 운송장을 제출한 후 화물을 반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물류흐름을 지체시키고 물류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종전 체제를 유지토록 재고 요청함과 아울러 복운업체의 창고시설등 제반여건이 성숙되고 화물터미널 지역이 보세구역(관세자유지역등)으로 운영되는 시점까지 종전과 같이 수출화물 접수절차 변경을 유보토록 요청했다.

특히, 인천공항내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포워더 전용창고나 제반시설이 부족하여 RFC상태로의 화물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됨과 아울러 화물터미널지역의 혼잡이 예상되고, 또한 창고시설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도 두 번에 걸친 화물반입현상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물류흐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복운업체창고에서 항공사터미널까지 화물이고 따른 인력 및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어 이의 조기시행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비롯한 우리 협회, 복운업계 및 무역업계 관계자와 몇차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9월 19일 하주협의회를 비롯한 무역업계와 대한항공, 우리 협회 등이 회의를 개최하여 수출항공화물 처리 절차를 종전과 같이 RFC되지 않은 화물도 접수는 하되 점진적으로 RFC화물을 확대 운영키로 하여 향후 복운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 FIATA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 참석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의 Bali Int'l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2003년도 FIATA 세계 총회에 송정섭 회장 및 김정민 전임회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FAPAA 및 CCTST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003년도 FIATA 총회는 '물류와 공급사슬에 있어서의 포워더의 역할'이라는 주제하에 각 분과회의-복합운송·항공·통관촉진·홍보·교육실무분과회의, 각 분과 자문기구회의, 2002년도 회계감사보고 및 2003년도 예산, 전체회의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또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

되는 제30차 FAPAA(Federation of Asia-Pacific Aircargo Association) 회의에는 김인환 부회장이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슬로바키아 Poprad에서 열리는 제12회 CCTST 회의(Coordinating Council on Transsiberian Transportation)에는 송정섭 회장과 박경호 북방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남북한 철도 연결에 따른 제반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CCTST 회의에는 협회에서 처음으로 참석하여 시베리아철도와 남북한철도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 ■·인천공항의 항공물류허브구축에 관한 의견 제시·■

### - 화물 취급 주체자에 대한 정책지원 절실해 -

**수**

출입 항공화물 물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 조기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화물을 취급하는 주체자인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인천공항내 복운업체 전용창고 건립 지원, 인천공항 이용관련 직·간접비용 개선, 화물터미널내 구내도로 체계 개선 등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화물을 취급하는 복운업체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9월 1일에는 인천공항공사 실무진과 관세자유지역 토지사용료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담당국장과도 토론을 벌이는 등 항공화물취급과 관련된 주변여건의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적극 요청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내에 대단위 복운업체 항공화물창고 건립계획(1만5천평 정도)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부지를 할애하고 토지사용료도 당초 사업계획(안 - 10,500원/m<sup>2</sup>/년)과 같이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

## ■· 반송항공화물등 이고 절차가 물류흐름 저해해 ·■

**항**

공기의 스케줄 변경 등으로 반송화물, Sea & Air 화물 및 Air & Air화물을 타장치장으로 이고시 인천공항세관의 화물반출입 신청절차가 불편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인천공항 세관의 집단화 지역내의 보세운송 특례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반출입 신고한 보세화물의 운송은 반입 예정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반입예정 보세구역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간이보세운송업자 및 하역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물반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세사(또는 화물관리인)에 확인 및 교부, 위임장(간이보세운송업자의 서명)작성 등의 서류준비와 화물반출로부터 1시간 이내에 반입지 보세구역에 화물반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대로 시행하는 경우 복운업체는 보세운송업자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상승과 화물반출입신청서 및 위임

장을 작성(서명) 등에 많은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어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수출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수입화물도 아닌 동일 세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출화물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복운업체가 지정한 일반차량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입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여유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위임장제출 제도 또한 폐지하여 화물반출입신청만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동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건의했다. ☺

## 부산·인천 해운 및 복운실무기초반 교육실시

### - 화물 취급 주체자에 대한 정책지원 절실해 -



**우**리 협회는 부산지역 회원사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28시간에 걸쳐 2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상포워딩 기초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협회 후원으로 인천복합운송협의회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3

주간 72시간동안 복합운송실무 기초반 교육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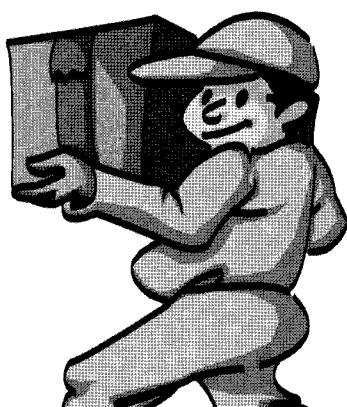
인천교육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상공회의소·중소기업청 등의 협조로 인천시 관내 실업계 여고 졸업반 60명을 선발해 복합운송개론, 해상운송실무, 항공운송실무, 선하증권작성, 항공운송장 작성 등 8개 교과목을 편성하여 협회에서 발간한 교재로 이루어졌다.

한편 3/4분기에는 해상포워딩단과반(7.3~9)에 21명, 항공포워딩단과반(7.11~18)에 29명, 포워딩영업실무 교육(7.24)에 38명이 수강하였고 해상포워딩부산교육(9.1~4)에 24명, 포워딩실무통신영어교육(9.3~4)에 23명, C/S예절교육(9.9)에 23명이 각각 수강하였다.

2003년도 4/4분기에는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해상포워딩단과반을 비롯하여 7개과정으로 총 8회 실시될 예정이다(표 참조).

### 2003년도 4/4분기 교육훈련계획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월)	지원금액(고용보험) 우선지원 대규모	비고
해상포워딩단과반	10. 6 ~ 10. 10	20	₩ 80,000	₩ 62,730	₩ 55,760
항공포워딩기초반	10. 27 ~ 11. 7	40	₩ 170,000	₩ 115,092	₩ 102,340
해상포워딩기초반	11. 10 ~ 11. 21	40	₩ 170,000	₩ 115,092	₩ 102,340
C / S 예절 교육	11. 1	4	₩ 10,000	-	-
포워딩영업실무	11. 25	4	₩ 10,000	-	-
포워딩실무통신영어	11. 27 ~ 11. 28	8	₩ 20,000	-	-
항공포워딩단과반	12. 1 ~ 12. 5	20	₩ 80,000	₩ 62,730	₩ 55,760
해상포워딩단과반	12. 8 ~ 12. 12	20	₩ 80,000	₩ 62,730	₩ 55,760



## 「윤리강령」제정 수립 시행

**관** 세청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 세관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초일류세관 추진과제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우리업계 등 주변단체에 「윤리강령」제정 및 「자율정화대책」수립 시행을 권고하였다.

이에 협회에서는 우리 복운업체 종사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자율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회원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 한국복합운송협회 윤리강령

우리는 복합운송업계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 다 음 -

- ①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수출입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회원상호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우리는 임직원 부당 스카웃 행위 및 과당경쟁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고객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올바른 윤리가치관을 확립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쇠선을 다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④ 우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정부공무원에게 일선, 청탁, 금품, 향응수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공무원을 빙자한 수출입 화주 등에게 금품, 향응수수 등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불법·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금품 또는 접대받은 향응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토록하며 협회장(또는 운영분과위원장)이 징계는 물론 해당 소속 대표에게 통보조치 한다.
- ⑤ 우리는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 ⑥ 우리는 명랑하고 친절한 자세를 생활화하여 대외공신력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쇠선을 다한다.